

#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23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저연차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(안 21조제20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 예고기간 : 2024. 5. 16. ~ 5. 22.

○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바. 부서 의견(자치행정과) : 기한 내 회신 없음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⑳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⑱ (생략)  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⑱ (현행과 같음)  <u>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                    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.</u>